



Department of Treasury

[Redacted]

[Redacted]

통지번호	CP75C
과세 연도	2009
통지 일자	2010년 11월 1일
사회복지보장번호(SSN)	[Redacted]
연락처	[Redacted]
귀하의 발신자 ID	[Redacted]
페이지 1 / 1	

귀하의 저소득 근로세 환급 (EIC)에 관한 안내 귀하의 세액공제 부인

귀하가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했거나 부정 청구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저소득 근로세 환급(Earned Income Credit)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에 대한 청구 금지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하의 세액공제를 부인합니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

귀하가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

추가 정보와 지침에 기재된 통지서를 30일 내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추가 정보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75c.
- 동봉한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 귀하의 이의 신청권을 설명하는 '심사 절차' (간행물 3498-A)
- 세무 양식,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와 연방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또한 납세자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합니다.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은 해당 지역의 클리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납세 보호 서비스(TAS)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상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원하거나, IRS의 체계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IRS 소속의 독립적 조직입니다. TAS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TAS의 사례 접수 무료전화 [Redacted]번 또는 TTY/TDD [Redacted]번으로 전화하여 TAS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advocate를 참조하십시오.
-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십시오.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